장학규정

제정 1989. 03. 01
개정 1993. 06. 02
개정 1997. 01. 01
개정 1997. 09. 09
개정 1999. 03. 01
개정 1999. 10. 01
개정 2001. 01. 01
개정 2002. 03. 01
개정 2002. 06. 01
개정 2003. 06. 01
개정 2005. 09. 01
개정 2007. 03. 01
개정 2007. 06. 01
개정 2009. 06. 01
개정 2009. 08. 31
개정 2010. 07. 01
개정 2012. 07. 30
개정 2013. 03. 15
개정 2013. 09. 30
개정 2016. 02. 29
개정 2017. 12. 14
전문개정 2019. 02.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내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부서) 장학업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2장 장학금 지급대상 및 종류

제3조(지급대상 및 종류) 본 대학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종류는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제4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추천 절차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 선발) 각종 장학금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장학금의 종류별 수혜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제6조(장학금 수혜기간) 교내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한다. 단, 외부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기관 및 지원자의 의사에 따른다.

제7조(장학금 이중수혜) 장학금의 종류나 구분에 관계없이 이중수혜가 가능하나, 장학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액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외로 하여 장학금 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공로장학금, 드리미장학금 등 총장이 인정하는 대가성 장학금
2. 교외장학금 중 지원기관이 생활비 등 대가성으로 명시한 장학금

제8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취소,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는 기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반환금액을 산정한다.

1. 장학금 신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2.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3. 제적 또는 자퇴한 자
4. 장학금 신청 후 그 의사를 철회하였거나 장학금 수혜에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5. 기타 장학금 반환 등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드리미 장학금의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 지급 방법) ① 각종 장학금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되며, 수혜 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매학기 종료 후 학과의 학회장 및 반대표는 학과장, 학생미디어센터는 주간교수, 총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는 담당부서장의 평가를 거쳐 해당학기 성적이 확정된 후 공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드리미 장학금은 담당부서의 해당 학기 지급일자 공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기준액 및 인원) 장학금 지급 기준액 및 수혜인원은 매 학년도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급한다.

제11조(기타) ①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규정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